

<친환경 제품 기준>

(주)효성 ESG경영팀

2024. 12.12

1. 국내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친환경·지속가능·저탄소·녹색 인증 제품

- 1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녹색제품구매법) 정의 및 적용범위에 따른 아래 제품
 - ① 녹색제품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
 - ② 환경표지인증제품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 - ③ 저탄소제품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
 - ④ 우수재활용제품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 - 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
- 2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 22조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기자재
- 3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Taxonomy)에서 규정하는 6대 환경목표(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, 순환경제로의 전환, 오염방지 및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)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제활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
- 4)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·확장되는 제품을 포함

2. 미국 농무부(USDA)의 Bio Preferred program, EU Ecolabel, Nordic Swan Ecolabel 등 국외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친환경·지속가능·저탄소·녹색 인증 제품

3. GRS(Global Recycled Standard), RCS(Recycle Claim Standard), ISCC PLUS, SGS ECO-Product, OEKO-TEX, Green Seal, ENERGY STAR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독립적 인증기관의 친환경·지속가능·저탄소·녹색 인증 제품